

건설업 벌칙규정



연재순서

1. 벌칙의 종류와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벌칙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불이익처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불이익처분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상의 벌칙 - 이번호**

건설산업 관련 법령수는 무려 80여개에 달하고, 행정처벌 또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법령상의 벌칙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지는 기계설비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편집자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상의 과징금 부과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유형의 수 및 위반 전력(前歷)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배)에 곱하여 산정한다.
- 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2. 세부 산정기준

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

- 1)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벌칙규정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조문	부과점수
1.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였을 때	법 제12조의3 제3항	100
1의2. 신고 또는 조정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을 때	법 제19조	
2. 법 제20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법 제2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나 명령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였을 때 나. 법 제11조제4항, 제13조제8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른 이자 또는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른 어음할인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였을 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탈법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였을 때	법 제20조	80
3. 서면의 발급·보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법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4.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였을 때	법 제4조	80
5. 법 제11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을 때 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지 않았을 때	법 제11조	
6.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3조의2	60
7.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등을 구매·사용하도록 강요하였을 때	법 제5조	
8.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제조등의 위탁을 취소·변경하거나 목적물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인수를 거부하였을 때	법 제8조	60
9.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였을 때	법 제10조	
10.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을 때	법 제12조의2	60
11. 법 제12조의3제1항·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을 때 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지 않았을 때	법 제12조의3 제1항·제2항	
12.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였을 때	법 제17조	40
13.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였을 때	법 제18조	
14.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법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6조	40
15.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7조	
16.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9조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조문	부과점수
17. 물품구매대금 등을 부당결제하게 하였을 때	법 제12조	40
18. 법 제13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을 때 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였을 때 마.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바.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사.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3조	
19. 법 제14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4조	
20. 법 제15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관세 등을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관세 등을 그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5조	
21. 법 제16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증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6조	
2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	법 제16조의2 제7항	

2)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및 위반 전력별 부과점수

구분			부과점수
위반금액의비율(B)	위반행위의수(C)	위반전력(D)	
20% 초과	4개 이상	과거 1년간 : 5점 초과 과거 3년간 : 8점 초과	100
10% 초과 20%까지	3개	과거 1년간 : 4점 초과 5점까지 과거 3년간 : 7점 초과 8점까지	80
5% 초과 10%까지	2개	과거 1년간 : 3점 초과 4점까지 과거 3년간 : 6점 초과 7점까지	60
5%까지	1개	과거 1년간 : 3점까지 과거 3년간 : 6점까지	40

3) 비교

-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의 유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는 상위유형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금액의 비율은 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까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 조사계획 발표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의 비율로 한다.
- 다) 위반 전력 1년간 또는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기준) 해당 업체가 받은 별표 3 제2호가목1)부터 6)까지에 따른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합산하고 과거 1년간 또는 3년간의 점수가 2가지 유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위유형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직권조사에 따라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계산방법

$$\text{점수합계(T)} = \text{위반행위의 유형의 부과점수(A)} \times 0.4 + \text{위반금액의 비율의 부과점수(B)} \times 0.2 + \text{위반행위의 수의 부과점수(C)} \times 0.2 + \text{위반전력의 부과점수(D)} \times 0.2$$

다. 과징금 부과금액의 산정

- 1) ㉠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한다.
- 2)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

